

|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0478   |
| 의 퇴 인  | 송옥주의원     |
| 회 답 일  | 2024.7.25 |
| 추 계 번호 | 24B0860   |

#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5조<br>(대중교통기본<br>계획의 수립) |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<br>9. 농어촌 및 벽지 <b>주민의 이동권 보장</b> 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<br>9의2.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읍·면·동 간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(신설)<br><br>• (현행) 주민을 위한 →(개정안) 주민의 이동권 보장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17조<br>(대중교통시책<br>의 평가)  |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(이하 “대중교통시책”이라 한다)을 <b>평가하여야 함</b> (제1항)<br><br>• (현행) 평가할 수 있음 →(개정안) 평가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<b>평가결과에 따라</b>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b>차등하여</b>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<br><br>• (현행)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→(개정안) 평가결과에 따라<br>• (현행) 우선적으로 →(개정안) 차등하여 | 재량규정 |

##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미첨부근거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조(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) | 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2  | 안 제17조 (대중교통시책의 평가) | • (미대상) 기 실시 사업([참고자료]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상세사유

- (안 제5조)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세부추진과제의 내용, 추진 주체, 추진방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국토교통부가 2022년 수립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는 4개 목표, 15개 세부전략, 46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으며, 이 중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국민의 이동권보장 목표의 세부추진과제로서 벽지노선 지원 확대 및 소외 도서지역의 해상교통권확보 2개의 건이 포함되어 있음
  -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가 추가로 포함될 경우, 동법 제12조<sup>1)</sup>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
  - 그런데 현재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전이어서 세부추진과제의 내용과 방법, 재정부담 주체 등에 관한 추계에 필요한 기초 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--

### 1) 제12조(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1.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
2. 저상(底床)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·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)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·다양화
3.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·개선
4.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·운영
5.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

[표 1]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현황

| 목표                | 세부 전략             | 세부추진과제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민의<br>이동권보장      | 여객운송사업의 공<br>공성강화 |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광역권역별 시외버스 지원체계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등 준공영제 도입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시외버스운송사업 지원체계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촉촉한 대중교통망<br>구축   | 철도망 확충 및 단절/병목구간 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광역버스 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<b>벽지노선 지원사업 확대</b><br><b>소외 도서지역의 해상교통권 확보</b> |
|                   | 서비스의 유연성 강<br>화   |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시내버스 운영효율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한 프리미엄 버스 증차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교통약자 이동권보<br>장    | 통합이동지원서비스체계 운영기반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중교통 안전성<br>향상    | 운수종사자<br>처우개선     | 운수종사자 근로제도 전환 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신규 운전자 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대중교통 안전성<br>강화    | 차량 첨단안전장비 설치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버스 정류장 내 사각지대 보완장비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안여객선 이용시설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감염병 대응            |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내 자동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열감지센서 설치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안전관리제도강화          | 대중교통수단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|
| 대중교통<br>경쟁력<br>강화 | 통행시간/속도 경쟁<br>력강화 | 급행철도망 확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광역/시내버스 급행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자전거/PM과 연계를 통한 접근시간 단축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요금 경쟁력 강화         |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및 요금정산체계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알뜰교통카드 확대 등 대중교통비 절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이용자 편의성 향상        | 통합교통서비스(MaaS)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환승센터 구축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여객운송 복지혜택 서비스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여객운송산업<br>지원 강화   | 연안여객선과의 연계·환승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노선 여객운송사업의 업종 및 운영행태 재구조화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상생발전을 위한 수단간 역할분담 및 위계 재정립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여객운송산업 재정지원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목표                   | 세부 전략                    | 세부추진과제(안)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탄소중립 실현 등<br>대중교통 혁신 |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 확대 및 인프라 구축 |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신기술 활용한 교통 서비스 혁신        |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 확대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접촉 요금징수시스템 도입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대중교통 시스템 고도화             | 시외버스 인면허 행정시스템 구축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중교통 정보화 사업 고도화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 확대 및 고도화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새로운 지표발굴 및 DB구축       |

자료: 국토교통부 “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: 2022~2026”. 2022.3.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III. 작성자

#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문지은 | 이유미 |

#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문지은 | 02-6788-4645 | mtsophia@assembly.go.kr |

## [참고자료] 대중교통 시책평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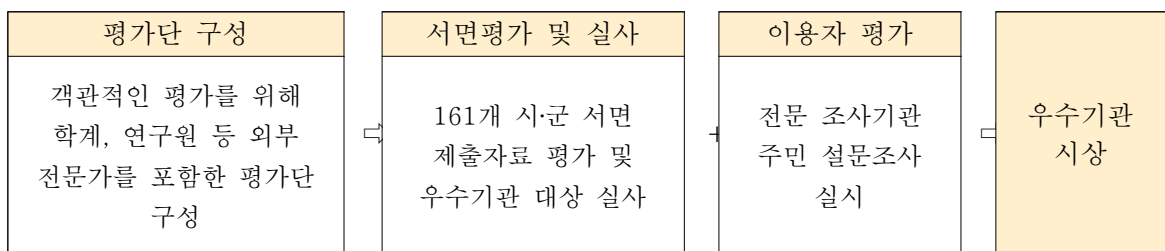
### □ 대중교통 시책평가 개요

- (평가 주체) 국토교통부장관
- (평가 근거) 대중교통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

제17조(대중교통시책의 평가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(이하 “대중교통시책”이라 한다)을 평가할 수 있다. \*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마다(홀수년) 실시

- (평가내용 및 절차) 대중교통 ①시설, ②서비스, ③행정 및 정책지원, ④이용자 4개 부문에 대한 지자체 시책평가

#### < 평가 절차 >



- (연구용역 예산) 206백만원(홀수년도 시행)

### □ 우선 재정지원 사례 (2018년 보통교부세 배분 내역)

- 우수기관(19) : A, B, C 그룹 각 3개 지자체, D, E 그룹 각 5개 지자체, 총 39억원
- 개선우수 (3) : B, D, E 그룹 각 1개 지자체, 총 6억원
- 우수시책 (5) : 그룹별 각 1개 지자체, 총 5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 | 대중교통시책평가     |              | '16.배분액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    | '17년 평가결과    | '18년<br>배분금액 |         |
| 합계  |              | 5,000        | 3,000   |
| 서울  | 서울시 A그룹 1위   | 350          | 200     |
| 부산  | 부산시 A그룹 3위   | 150          | 100     |
| 대구  | 대구시 A그룹 우수시책 | 125          | —       |
| 인천  | —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50     |
| 광주  | —            |              | —       |
| 대전  | 대전시 A그룹 2위   | 200          | 50      |
| 울산  | —            |              | —       |
| 경기  | 수원시 B그룹 1위   | 350          | 700     |
|     | 고양시 B그룹 2위   | 200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남양주시 B그룹 3위  | 150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김포시 C그룹 3위   | 150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연천군 E그룹 3위   | 150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양평군 E그룹 5위   | 100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부천시 B그룹 우수시책 | 125          |         |
| 강원  | —            | —            | 250     |
| 충북  | 제천시 D그룹 3위   | 150          | —       |
| 충남  | 보령시 D그룹 5위   | 100          | 100     |
|     | 서산시 D그룹 개선   | 200          |         |
| 전북  | 전주시 C그룹 1위   | 350          | 250     |
|     | 완주군 E그룹 1위   | 350          |         |
| 전남  | 순천시 D그룹 1위   | 350          | 300     |
|     | 여수시 D그룹 2위   | 200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고흥군 E그룹 2위   | 200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광양시 D그룹 4위   | 100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나주시 D그룹 우수시책 | 125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곡성군 E그룹 우수시책 | 125          |         |
| 경북  | 의성군 E그룹 개선   | 200          | 550     |
| 경남  | 창원시 C그룹 2위   | 200          | 250     |
|     | 함안군 E그룹 4위   | 100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양산시 B그룹 개선   | 200          |         |
| 제주* | 제주시 C그룹 우수시책 | 0*           | 100     |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